

商標法 및 意匠法改正公聽會 盛了

8名의 公述人 主題發表후 열띤 討論벌어

商標法 및 意匠法이 대폭 改正된다.

特許廳은 지난 6月23日 오후 2時 特許廳 研修室에서 企業의 特許管理要員·辨理士·特許廳 및 本會 직원·기타 관련 人士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商標法 및 意匠法 改正試案에 대한 公聽會를 열고 各계의 意見을 종합했다.

이번 公聽會에서는 本會가 추천한 全우경 삼양식품공업(주) 이사와 減수영 특허실 부장 등 公述人 8명의 主題發表에 이어 열띤 討論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改正試案은 관련 부처의 意見조정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定期國會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商標法 및 意匠法改正의 主要方向

商標法 및 意匠法 改正의 主要方向이 이번 公聽會에서 있는 朴弘植 特許廳長의 開會辭에서 밝혀졌다.

朴廳長은 開會辭에서 『特許法 體制정비에 따라 商標法 및 意匠法도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그 體制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商標·意匠制度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商標의 경우 파리協約 第6條3에 規定된 파리協約 同盟國內의 公共機關이 사용하는 감독용 및 증명용의 記號나 印章과 類似한 商標의 出願은 商標登錄을 不許하도록 商標不登錄 事由를 확대하고, 意匠의 경우에는 현재 出願前 國內에서 公知·公開된 意匠에 대해서만 意匠의 不登錄要件으로 하고 있던 것을 國外에서 公知·公開된 意匠에 대해서까지 意匠登錄의 不登錄要件으로 함으로써 公知·公開의 지역적 판단기준을 國內主義에서 國際主義로 전환하였다』고 말했다.

朴廳長은 또 『商標權者 및 意匠權者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商標權을 移轉하는 경우에 現行 制度下에서는 特定商品을 전부 移轉하는 경우에만 許容되고 있으나 이를 指定商品別로 분리하여 移轉토록 하여, 指定商品의 일부 無効 또는 일부 取消事由를 내포하고 있는 일부 指定商品으로 인한 商標權 자체의 소멸을 방지토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 朴廳長은 『商標 不使用 商標權者의 制裁를 강화하기 위하여 取消審判制度에 있어서 現제는 商標登錄審判이 제기된 후 商標權을 포기하거나 指定商品을 일부 말소하는 경우 取消審判이 却下되어 取消審判制度가 實效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을 是正하여 審判請求日 이후 포기·말소하는 경우에는 審決내지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3年內에는 登錄을 받을 수 없도록 商標登錄抹消要件을 강화 하였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뒷면 開會辭 참조)

公聽會 公述人 및 論題

- ▲李상정(한국소비자보호원 主任研究員) 商標 取消審判 申請權者의 범위
- ▲成수영(금성사 特許部長) 商標權의 침해
- ▲金용인(辨理士) 商標取消審判에 있어서의 利害관계
- ▲金성택(辨理士) 意匠法 총칙
- ▲李상진(辨理士) 商標權 移轉 및 聯合商標制度와 指定商品 추가 制度
- ▲全우경(삼양식품공업(주) 理事) 商標登錄의 取消 및 商標權利 移轉
- ▲金철수(辨理士) 商標의 使用權制度와 商標登錄 갱신制度
- ▲金연수(辨理士) 意匠登錄要件(♣)